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5권  
2010년 2월 pp. 33~50

논문접수일 2010.01.30  
논문심사일 2010.02.13  
심사완료일 2010.02.23

##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2009. 9월 2차 초안을 중심으로-

허 재 창\*

- 
- I. 서 론
  - II.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
  - III.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 IV. 평가 및 결론
- 

주제어 : 인코텀즈2010, 인코텀즈2000의 개정판, 국제상업회의소(ICC)

### I. 序 論

Incoterms는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이는 국제통일법이나 조약과 같이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임의규정이지만 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CP)과 함께 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동 경영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Incoterms는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상관습에 대응하기 위해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의 Incoterms는 2000년에 개정된 것인데, 9년이 경과한 2009년에 비로소 7차 개정 Incoterms 2010<sup>1)</sup>의 1차 초안과 2차 초안이 작성되었다. 최종안은 2010년 가을에 배포될 것이며 별 문제 없이 확정이 되면 새로운 Incoterms 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번의 Incoterms 2010의 1차 초안 및 2차 초안에는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및 재분류, 서론(Introduction)의 대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중 일부 표제의 변경, 국내거래로의 적용확대, EDI의 삭제, ‘의무 없음’ 표현의 구체화, 화물에 관한 보안관련 제공의무의 추가 등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ncoterms 2010의 2차 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개정내용을 통해 향후의 Incoterms 2010의 내용을 미리 고찰함으로써 무역관련 당사자, 학자 및 연구자들의 Incoterms 2010에 관한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무역당사자들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을 선택·사용하는 우(愚)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들 거래에 적절한 거래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자 함에 그 목적 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초안그룹(Drafting Group)이 제공한 Incoterms 2010 1차 초안 및 2차 초안에서 제시된 내용, Incoterms 2010 관련 웹사이트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다.

## II.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새로운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Incoterms의 구조

---

1) 1차 초안에는 Incoterms가 매 10년마다 개정된다는 기대를 회피하기 위해 개정 Incoterms는 Incoterms 3000으로 불리었으나, 2차 초안에서는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Incoterms 2011로 명명되었다. 3차 초안에서는 발효일보다는 배포일을 반영하여 Incoterms 2010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과 달리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거래조건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크게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전용조건으로 단순화시켜 분류하였다.<sup>2)</sup>

<표 1> Incoterms 2010

구 분	조 건	비 고
복합운송조건 (TERMS FOR ANY MODE OF TRANSPORT)	EXW	
	FCA	
	CPT	
	CIP	
	DAP	기존의 DAF, DES, DDU 조건을 통합한 조건
	DDP	
해상전용조건 (MARITIME-ONLY TERMS)	FAS	
	FOB	
	CFR	
	CIF	
	DEQ	1차 초안에는 DAP에 흡수되었으나, 2차 초안에는 독립된 조건으로 유지됨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 2. 새로운 서론의 등장

Incoterms 2010의 서론(Introduction)은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CHANGES FROM INCOTERMS 2000'이라는 제목으로 대체될 것 같다. 참고로 1차 시안의 경

---

2) Incoterms 2000은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을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의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우 서론은 General Guidance' section<sup>3)</sup>이었다.

###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표제의 변경

Incoterms에서는 각 정형거래조건별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10개의 표제로 상호 대칭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번 Incoterms 2010에서는 일부 표제의 변경이 있었다.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그 변경내용은 다음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의 표제의 변경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	비고
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물품과 서류의 제공	변경
A2	허가, 인가 및 통관절차	허가, 인가, 보안통관(security clearances) 및 기타 통관절차	변경
A3	운송 및 보험계약	좌동	
A4	인도	좌동	
A5	위험의 이전	좌동	
A6	비용의 분배(Division of costs)	비용의 배분(Allocation of costs)	변경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좌동	
A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인도증명	변경
A9	검사포장·하인	좌동	
A10	기타의무	좌동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3) 여기에는 Application, Carrier, Customs clearance, Container/Packing, Delivery, Electronic for, Insurance cover, Named point/place/port, No obligation owed, Price, Security -related information, Title, VAT/Taxes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3〉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의 표제의 변경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	비교
B1	대금의 지급	좌동	
B2	허가, 인가 및 통관절차	허가, 인가, 보안통관(security clearances) 및 기타 통관절차	변경
B3	운송 및 보험계약	좌동	
B4	인수	좌동	
B5	위험의 이전	좌동	
B6	비용의 분배(Division of costs)	비용의 배분(Allocation of costs)	변경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좌동	
B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인도증명	변경
B9	물품의 검사	좌동	
B10	기타의무	좌동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 4. 국내거래로의 적용확대

Incoterms 2010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Incoterms가 국내매매거래에 적용되는 경우는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 국가 내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대국의 거래를 들 수 있다.<sup>4)</sup>

Incoterms 2010에서의 거래조건 적용 예를 살펴보면 EXW 조건은 국내거래에 적합한 반면에, FCA 조건은 통상 국제거래에 적합하고, DAP 조건은 국내 및 국제거래 모두 사용될 의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4) 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Incoterms 3000-1st Draft, 2009.2,의 General Guidance 중 Customs clearance 참조.

## 5. EDI의 삭제

EDI의 언급은 대체적인 전자통신 방식을 고려하여 삭제되었다. 따라서 Incoterms 201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 A1과 A10 내용 중의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문구와 A8 표제의 제목중의 동일한 문구가 삭제되었다.

## 6. 의무 없음(No obligation owed)의 표현의 구체적 명시

Incoterms 2010에서는 11가지 조건의 Incoterms에 걸쳐 10개의 표제로 상호 대칭되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표제하에서는 어느 일방만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고, 다른 상대방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어떤 다른 표제하에서는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Incoterms 2010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sup>5)</sup> 부연 설명하면 Incoterms 2000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중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표제하에서 ‘의무 없음’의 표현을 ‘No obligation’이라고 하였는데, Incoterms 2010 1차 초안에서는 ‘No obligation owed by the seller (또는 buyer) to the buyer (또는 seller)’로 바뀌었으며, Incoterms 2010 2차 초안에서는 ‘There is no obligation owed by the seller (또는 the buyer) to the buyer (또는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또는 insurance)’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7. 화물 보안 정보 제공의무의 추가

이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테러사건이후 변화를 수용하여 화물 보안 정보 요건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는 DDP조건을 제외하고 매도인은 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수인에게 협조를 해야 하며, 매수인도 매도인이 상기의무를 행할

---

5) 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supra* note 4.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일체의 화물 보안 정보 요건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6)</sup>

### III.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이하에서는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을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전용조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 1. 복합운송조건

##### (1) EXW

① 이 조건은 사용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운송방식이상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거래에 적합한 반면에, FCA는 통상 국제거래에 더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EXW 전문).

② 이 조건에서는 지정 인도장소내의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한 명료하게 지정 인도장소내의 지점을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EXW 전문). 이는 FC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조건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매수인이 EXW 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한 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수출/수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협조나 서류를 제공하는 매도인의 의무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실제로 물품을 적재하기에 더 나은 입장에 있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 인도가 매도인의 시설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지우는 FCA가 통상 더 적절하다. 셋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

6) Incoterms 2010상의 각 거래조건의 매도인의 의무사항 제 A10조 및 매수인의 의무사항 제 B10조.

매도인은 이러한 정보를 예를 들면 과세 목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른다(EXW 전문).

④ 구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모든 일치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기타의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A1조). 이는 Incoterms 2010하의 모든 정형거래조건에서 마찬가지이다.

⑤ 이 조건에서는 적용가능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보안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제공할 의무를 추가하였다(제 A2조).

⑥ 이 조건에서는 구규칙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중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표제하에서 ‘의무 없음’(No obligation)의 표현을 ‘운송계약(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도인(또는 매수인)이 매수인(또는 매도인)에게 지는 의무는 없다’(There is no obligation owed by the seller (또는 the buyer) to the buyer (또는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또는 insurance)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험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종전의 제 A10조에서 제 A3조 b)항으로 옮겨 규정하였다(제 A3조, 제 B3조).

⑦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 및/또는 수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협조를 제공한다는 종전의 의무에 보안관련 정보 제공의무가 추가되었다(제 A10조).

⑧ 이 조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 기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화물보안정보 요건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었다(제 B10조).

## (2) FCA

① 이 조건은 EXW와 마찬가지로 사용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운송방식이상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FCA 전문).

② 이 조건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인데, 개정규칙에서는 ‘지정된 장소’(the named place)의 표현대신에 ‘매도인의 시설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로 구체화하였다(FCA 전문).

③ 이 조건에서는 당사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명료하게 지정 인도장소내의 지점을 장소를 명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일 당사자가 매도인의 물품적재의무를 자신의 시설로 제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FCA seller's premises"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조건이며, 이와는 반대로 당사자가 물품을 다른 장소에서 인도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다른 구체적인 인도장소를 명기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FCA 전문).

④ 이 조건에서는 적용가능한 경우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이행의무와 수입관세 또는 일체의 통관절차비용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였다(FCA 전문). 이는 CPT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의무사항 중 물품과 서류의 제공(제 A1조), 보안통관(제 A2조),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제 A3조), 보안정보요건통지의무(제 B10조)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전술한 EXW조건과 동일하다.

### (3) CPT

① 이 조건에서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인도장소(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곳)와 지정 목적지(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위해 계약해야 하는 장소) 모두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도지점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면 위험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전적으로 매도인이 선택한 시점-에 이전된다는 것을 매수인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CPT 전문).

② 이 조건에서는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정확히 그러한 선택에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운송계약하에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또는 취급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비용을 회수할 권리라는 없다고 규정하였다(CPT 전문).

③ 이 조건에서는 만일 복수의 운송인이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사용된다면 default position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규정하였다(CPT 전문).

④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출통관의무, 수입통관이행의무 및 수입관세지급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전술한 FCA 조건과 동일하다.

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 의무 없음과 매수인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체결 의무 없음의 표현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전술한 EXW조건과 동일하다(제 A3조 및 제 B3조).

#### (4) CIP

① 이 조건은 사용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운송방식이상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CIP 전문).

②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만일 있다면 합의된 장소에서 자기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지만, 나아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에 비해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었다(CIP 전문).

③ 이 조건에서 보험조건과 관련하여 구규칙에서는 “보험은 협회적하약관(런던보험자협회)<sup>7)</sup>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들의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 협회적하약관(런던의 국제언더라이팅협회)<sup>8)</sup>의 C조건이 제공하는 최소담보의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추가 담보를 필요로 하는 위험의 종류에 종전의 전쟁, 동맹파업, 폭동 소요위험에 더하여 테러리즘 또는 정치적, 사상적 또는 종교적 동기에 의해 야기되는 사건(terrorism or incident caused by a political, ideological or religious motive)에 대한 위험이 추가되었다.<sup>9)</sup> 한편 보험담보의 기간과 관련하여 구규칙에서는 “보험담보의 기간은 B5(위험의 이전)와 B4(인수)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개정규칙에서는 “보험담보의 기간은 A4(인도)나 A5(위험의 이전)에서 규정한 인도시점보다 늦지 않게

7) Institute Cargo Clauses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8) Institute Cargo Claus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ondon (ILA))

9) 이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범위의 위험을 반영하여 최근 개정된 협회적하약관(2009)에서 새로이 도입된 테러리즘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시환, “2009년 ICC와 1982년 ICC상의 면책위험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8., pp.291 ~ 292.

개시하고, 적어도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여 종전보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A3조).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그 밖의 CIP 전문에서의 개정내용은 전술한 CPT 조건의 ①~④ 내용과 동일하다.

#### (5) DAP

① 이 조건은 종전의 DAF, DES, DEQ 및 DDU조건을 통합한 것<sup>10)</sup>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도착된 운송수단상에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때 인도의무를 다한 것을 의미하고,<sup>11)</sup>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DAP 전문).

② 이 조건에서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명시, 운송계약 취득 및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및 취급비용에 관한 개정내용은 전술한 CPT 및 CIP 조건의 관련내용과 동일하다.

③ 이 조건에서는 만일 인도가 국제적이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이행의무와 수입관세 또는 일체의 통관절차비용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였다(DAP 전문). 이는 전술한 FCA, CPT 및 CIP 조건과 마찬가지이다.

④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 의무 없음과 매수인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체결 의무 없음의 표현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전술한 EXW조건과 동일하다(제 A3조 및 제 B3조).

#### (6) DDP

① 이 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에 의한 양하가 준비되어 있는 도착한

10) 1차 초안에서는 DAP조건에 DEQ조건이 포함되었으나, 2차 초안에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조건으로 남아 있다.

11)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놓여진 때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다하는 조건이다(DDP 전문).

② 이 조건에서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명시, 운송계약 취득 및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 및 취급비용에 관한 개정내용은 전술한 CPT, CIP 및 DAP 조건의 관련내용과 동일하다.

③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통관을 취득할 수 없다면 DDP조건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만일 당사자들이 매수인이 수입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DA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DP 전문).

④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 의무 없음과 매수인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체결 의무 없음의 표현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전술한 EXW조건과 동일하다(제 A3조 및 제 B3조).

## 2. 해상전용조건

### (1) FAS

① 이 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다하는 조건인데, 개정규칙에서는 선측의 예로 '부두상 또는 거룻배 위'(on a quay or a barge)의 표현을 추가하였다(FAS 전문).

② 이 조건에서는 지정선적항의 선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한 명료하게 그 지점을 명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비용 및 관련 취급비용은 항구의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FAS 전문).

③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본선의 선측이 아니라 내륙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전형적이므로,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FAS 조건은 부적절하며,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FAS 전문).

④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을 요구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이행의무와 수입관세 또는 일체의 통관절차비용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였다(FAS 전문). 이는 FOB, CFR, CIF 및 DEQ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⑤ 이 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험계약 및 운송계약체결 의무 없음의 표현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전술한 EXW조건과 동일하다(제 A3조 및 제 B3조). 이는 FOB, CFR, CIF 및 DEQ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2) FOB

①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취득하는 것(deliver the goods, or procures the goods delivered)을 의미하고, 매수인은 그 시점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했을 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FOB 전문).

② 이 조건은 선박의 난간 이외의 지점-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내륙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물품 또는 roll-on/roll-off 또는 LASH 선박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FOB 전문).

### (3) CFR

① 이 조건은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했을 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CFR 전문).

② 이 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에는 항상 목적항을 명기하지만, 본선의 난간을 가로질러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인 선적항은 명기하지 않는다. 만일 매수인이 이 항구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CFR 전문).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조건에서는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므로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도인은 정확히 그러한 선택에 일치하는 운송계약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운송계약하에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또

는 취급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비용을 회수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였다(CFR 전문).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이 조건은 선박의 난간 이외의 지점,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내륙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물품 또는 roll-on/roll-off 또는 LASH 선박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FR 전문).

#### (4) CIF

① 이 조건은 FOB 및 CFR 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했을 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CIF 전문).

② 이 조건은 선박의 난간 이외의 지점,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내륙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물품 또는 roll-on/roll-off 또는 LASH 선박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CIF 전문).

③ 이 조건에서 보험조건, 추가담보를 필요로 하는 위험의 종류, 보험담보의 기간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전술한 CIP조건과 마찬가지이다.

#### (5) DEQ

① 이 조건은 1차 초안에서는 DAP 조건에 흡수되었지만, 2차 초안에서는 인도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지되었다.

② 구규칙에서는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 내외의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집화장 등)로 물품을 처리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또는 DD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규칙에서는 DDU대신에 DAP로 변경되었다(DEQ 전문).

## IV. 평가 및 결론

지금까지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과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은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및 재 배열, 서론(Introduction)의 대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중 일부 표제의 변경, 국내거래로의 적용확대, EDI의 삭제, ‘의무 없음’ 표현의 구체적 명시, 화물 보안관련 제공의무의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전용조건으로 나누어 각 정형거래조건에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Incoterms 2010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ncoterms상의 적절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을 둘러싸고 종전부터 계약당사자들이 운송방식에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적용하여 거래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Incoterms 2010에서는 종전과 달리 정형거래조건을 크게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전용조건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무역당사자들이 그들의 거래에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Incoterms 2010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점에 종전의 Incoterms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EXW는 국내거래에 적합한 반면에, FCA는 통상 국제거래에 적합하고, DAP는 국내 및 국제거래 모두 사용될 의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9·11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의 대테러전략의 변화가 현저히 변하였다. Incoterms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화물에 관한 보안관련 정보제공의무가 신설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매도인은 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수인에게 협조를 해야 하며, 매수인도 매도인이 상기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일체의 화물 보안 정보 요건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그동안 정형거래조건 선택시 비교적 대중적이지 못한 DAF, DES, DDU조건을 통합하여 새로운 조건이 DAP조건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 조건은 국내 및 국제거래 모두 사용될 의도로 신설된 것으로 앞으로 그 활용이

기대되는 바이다.

끝으로 무역관련 당사자들은 Incoterms 2010상의 개정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무역관련 당사자들이 Incoterms 2010상의 거래조건 선택시 그들 거래에 적합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 ABSTRACT

### Preliminary Review on Proposed New Contents in Incoterms 2010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2nd Draft

September 18, 2009

Huh, Jae Chang

The Incoterms, short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have been widely used a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since 1936.

The Incoterms have been revised six times in order to adapt them to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The current version is Incoterms 2000.

The revised version of Incoterms 2000 will be publish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and will be effective from January 1st 2010. The first and second draft of Incoterms 2010 have been carried out by a small global Drafting Group, representing seven nationalities and various areas of substantive expertis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main contents in the 2nd Draft of Incoterms 2010.

This paper contributes to help the parties concerned to understand the new changes from Incoterms 2000 and to choose the appropriate trade term.

Key Words : Incoterms 2010, Incoterms 2000, 2nd Draft

## 참 고 문 헌

- 대한상공회의소·ICC한국위원회, 인코텀즈 2000, 대한상공회의소·ICC한국위원회, 1999.
- 이시환, “2009년 ICC와 1982년 ICC상의 면책위험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8.
- 이재복, “협회적하약관(ICC)상 운송조항(Transit Clause)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8.
- 전순환, 인코텀즈 2000에 관한 ICC지침, 두남, 2002.
-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한울출판사, 1999.
- 國際商業會議所 日本委員會, Incoterms 2000,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99.
- Charles Debattista, Incoterms in Practice, ICC Publishing SA, 1995.
- Emily O' Connor, "Inoterm 3000", 2009.
- Frank Reynolds, Incoterms for Americans, International Projects, Inc., 1999.
- ICC, 1st Draft of Incoterms 2010, 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2009.2.
- ICC, 2nd Draft of Incoterms 2010, 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2009.9.
-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Publishing SA, 1999.
- Jan Ramberg·Philippe Rapatout·Frank Reynolds and Charles Debattista, Incoterms 2000 A forum of experts, ICC Publishing S A, 2000.
- <http://kwtc.org/theTradePost/2009/Mar26/Mar26.html>(2009/10/20)
- [http://www.tolee.com/html/incoterms\\_3k\\_draft1.htm](http://www.tolee.com/html/incoterms_3k_draft1.htm)(2009/10/20)
- <http://www.djacobsonlaw.com/2010/01/incoterms-update-incoterms-2010-likely.html>(2010/02/20)